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7. 2. 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가. 통장의 연임규정에 제한이 없는 이유등으로, 적극적인 통장 후보가 추천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,
- 나. 동 행정 및 주민 지역 업무를 효율적,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령 및 연임규정과 해촉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,
- 다. 위촉자격 상한연령자에 대한 당연해촉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개정골자

- 가.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통장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.(안 제4조)
- 나. 임기중 해당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된다고 개정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기함.(안 제4조)
- 다. 통장의 위촉시 연령 제한을 20세이상 65세이하에서 30세이상 63세 이하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신망을 높이고 통장의 활동력을 높임.(안 제5조제2항)
- 라. 2007년 4월 1일 현재 재임중인 통장으로서 63세가 넘는 자는 현직에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 된 날에 해촉된다. 다만 임기중 연령이 65세가 넘으면 당연 해촉된다.(부칙 제2조제1항)
- 마. 2007년 4월 1일 현재 재임중인 통장으로서 20세이상 30세미만의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 된 날에 해촉된다.(부칙 제2조제2항)

3. 개정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

4. 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06. 9. 28 ~ 2006. 10. 18(제출된 의견 별첨)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1부

다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통·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통·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통·반설치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설치조례”로 한다

제4조중 “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하고 “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”을 “위촉자격상한연령을 초과하면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중 “20세이상 65세이하”를 “30세이상 63세이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에 관한 경과조치) ① 2007년 4월 1일 현재 재임중인 통장으로서 63세가 넘는 자는 현직에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 된 날에 해촉된다. 다만 임기중 연령이 65세가 넘으면 당연 해촉된다.

② 2007년 4월 1일 현재 재임중인 통장으로서 20세이상 30세미만의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 된 날에 해촉된다.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통·반설치조례”	제명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설치 조례”
제4조(통장의 임기)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<u>연임</u> 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<u>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</u> 당연 해촉된다.	제4조(통장의 임기) ----- ---- <u>2회에 한하여 연임</u> ----- ----- <u>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</u> ----- ----
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① (생략) ②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<u>20세이상 65세이하</u> 의 자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 ③~④ (생략)	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 <u>30세이상 63세이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~④ (현행과 같음)